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9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이명녀, 안영호, 박경흠
정재환, 김도운, 홍영진
강혜순, 문희성

1. 제정이유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나.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신청, 지급,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2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8. 14. ~ 8. 20.(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수당 지급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지원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신청 및 지급)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 5만 원 이내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시기,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사업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재가급여 월60시간 이상, 시설급여 월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종사자
- 지급인원

(2025. 7월 기준)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원	113명	121명	129명	138명	148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예산액	67,800	72,600	77,400	82,800	88,800	389,400

※ 산출내역: 대상인원(매년 7% 증가 추산) × 50,000원 × 12개월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시비						
기금						
구비	67,800	72,600	77,400	82,800	88,800	389,400
기타						
합계	67,800	72,600	77,400	82,800	88,800	389,400

1. 부대의견: 해당없음
2. 협의사항: 예산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3. 작성자: 사회복지6급 이미영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4. 12.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4. 12. 20.>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2024. 12. 20.>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

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